<한선재단>

노동법 개혁, 무엇을 어떻게

2019. 3. 28(목)

이승길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 배경

(1)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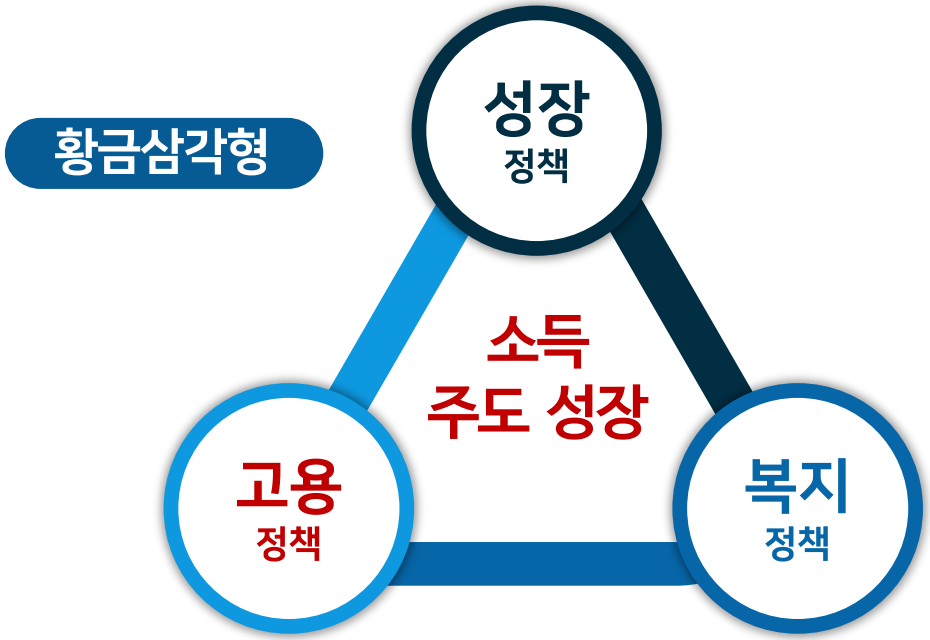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소통하는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 개혁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성장) 4차산업혁명 창업과 혁신성장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강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자치분권 균형 발전	국방개혁 미 전략자산 전진배치
100대 국정과제	15개	26개	32개	11개	16개

1. 배경

(2)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 **세계화, 고령화/저출산, 경기 침체/내수 부진, 경제성장율**
- **이윤주도성장 (낙수효과) ⇒ 소득(임금)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일자리창출)/ 공정경쟁/혁신성장 = 포용성장론**
- **일자리↑ → 소득↑ → 소비↑ → 투자↑ → 일자리(창출)↑**



1. 배경

(3) OECD보고서 – KOREA권고안(포용적 성장)

1) 정규직의 일자리 보호 낮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을 확대/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의 분절화 타개
2) 좋은 시간제 일자리와 육아지원을 통해 여성 고용을 높힘
3) 노인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의 목표로 절대빈곤을 탈피. 국민연금을 강화해 소득대체율 50%로 유지. 기업과 개인의 연금제도의 확대 강화
4) 유연한 고용과 임금제도를 확대, 평생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령인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함
5) 법적 정년을 점진적 상승, 종국에 정년제도 폐지
6)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서 가계부채 문제 잘 통제

1. 배경

(3) OECD보고서 – KOREA권고안(포용적 성장)

7) 영세기업의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의 개선, 영세기업의 성장을 위해 인터넷의 활용 장려

8) 청년취업을 장려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을 개선

9) 육아휴가와 시간제 등 유연한 고용기회를 장려. 경제적/수준높은 탁아/어린이 교육시설 확충

10) 기초연금의 자격 완화, 적정예산 확보, 수혜자가 노동 참여토록 인센티브 설계

11) EITC(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자영업자를 비롯해 확대

1. 배경

(3) OECD보고서 – KOREA권고안(포용적 성장)

BUSINESS NEWS OCTOBER 19, 2017 / 4:08 PM / A YEAR AGO

Labor productivity, reforms top tasks for South Korea: OECD chief

Choonsik Yoo 2 MIN REA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Jose Angel Gurria, from Mexico, holds up a copy of the organization's Economic Survey of the UK during an OECD press conference at the Treasury in London, Britain, October 17, 2017. REUTERS/Matt Dunham/Pool

SEOUL (Reuters) -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and reforming labor practices are among the top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 as it grapples w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high youth unemployment, the head of the OECD said on Thursday.

South Korea ranks near the bottom in labor productivity with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s South Koreans work long hours even while creating little value added, OECD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오랜 노동시간을 일하지만 부가가치 생산이 작아서 OECD에서 바닥. 50% 정도에 불과

➢ 더 많은 교육훈련의 투자, 노동시장/상품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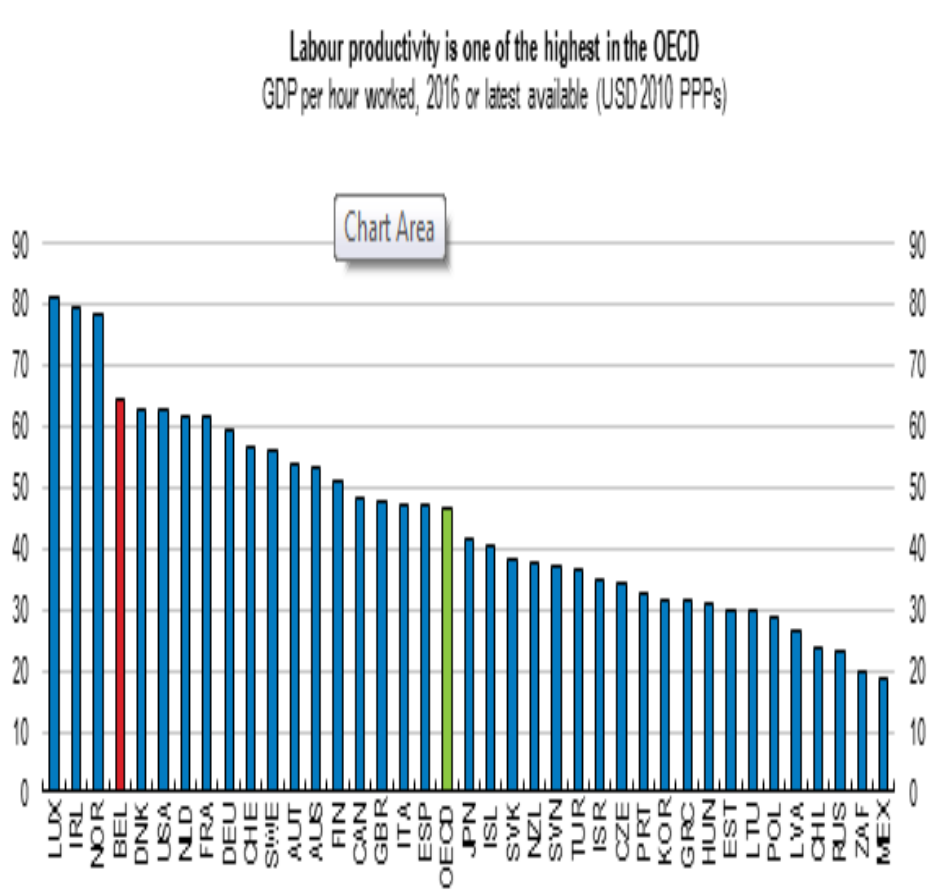
◆ 현 정부가 분배에만 편중된 비판에 대해, OECD사무총장 Gurria는 정부는 소득격차와 성장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

✓ "당신이 더 경직된 노동시장을 만들고 고임금을 유지하면서 노조의 편이라면, 새로운 구직을 막는 것. 더 많은 청년이 희생될 것"

✓ "장년층은 이미 일자리 보장, 조합원으로 더 많은 보호를 받아 청년층이 고통을 받게 됨"

1. 배경

(3) OECD보고서 – 노동생산성 (2016)



Source: OECD

Labor Productivity Ranking

(Unit: $)

1	Luxemburg	89,233
2	U.S.	73,875
3	Norway	73,703
4	UAE	71,693
5	Belgium	71,163
9	Singapore	67,169
10	France	64,975
23	Germany	56,067
28	Japan	52,739
33	Korea	42,373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 공약 : 노동존중사회 실현(1)

◆ 노동존중사회 실현/노동시장의 불평등 완화 노동정책

◆ 포용적 노동체계=사회적 대화(노사의 정책참가) 시작

① 비정규직/청년/여성/대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18년부터 노사관계법 제도 개선 추진)

② 임기 내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달성 (근로시간단축)

③ 최저임금, 체불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④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⑤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⑥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⑦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이해 대변

⑧ 경찰, 소방관 →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자료: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집

2. 공약 : 노동존중사회 실현(2)

⑨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⑩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위험업무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⑪ **감정근로자보호법 제정,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개정 등**

⑫ **ILO 핵심협약 비준**

-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87호/98호 협약 비준 추진
- 강제근로- 29호/105호 협약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등 참여 주체 확대 및 이해대변기구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마련

➢ 의제별·업종별委 운영(18.下)

❖ 사회안전망개선(7.12 출범)/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산업안전보건/디지털 전환 및 미래 위원회의 4개 의제별委 출범

❖ 금융산업/해운업/보건의료산업/공공기관의 4개 업종별委 구성 논의 출발 예정(11월)

자료: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집

3. 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1기)

목 표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실현'
'좋은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근로조건 개선

- 노동시간 단축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 최저임금 안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산업재해 예방 강화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존중사회 조성

- ILO 핵심협약 비준
  부당노동행위 근절
- 직장내 갑질, 성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특고·하도급노동자 보호
- 사회적 대화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

- 고용영향평가 확대
  지역일자리 위기 대응
- 청년일자리 대책(3.15)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 저출산 고령화대비
  여성·고령자 대책 추진
- 장애인 일자리 정책 추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응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고용센터 기능 혁신
- 미래 직업훈련 강화

3. 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2기-1)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조건 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장애인 등 취약 노동자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최저임금 연착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취약 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사회적 대화 활성화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및 직장내 괴롭힘 근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취업지원 서비스 혁신 -미래인재 양성

자료: 고용노동부,주요업무 추진현황(2018.10.11)

3. 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2기-2)



자료: 고용노동부,주요업무 추진계획(2019.3.15)

3. 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3)

2대 노동정책 방향

고용 창출

-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

근로시간 단축

고용 안정

- 비정규직 감축, 처우 개선
- 공공부문⇒민간부문 확산

⇩

최저임금제

4. 노동법 개정

(1) 정부주도 추진

◆ 정부 주도 : 노동존중 정책 실현,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노정대화 등도 시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도입과정시 사전합의가 부족했던 불합리한 지침의 폐기/ 보완을 통해 노사정간 신뢰 회복 도모, 사회적 대화 초석 마련(현장갈등 해소)

➢ 2대 지침* 공식 폐기선언(17.9.25)/위법한 단협지도 변경계획시행(17.10.30)

① 공정인사 지침/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② 불합리한 단협 시정지도 중단/산재사망자 자녀우선채용 시정 유보(대판시까지)

4. 노동법 개정

(2) 국회 동향

◆ 다양한 정치 일정이 노동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선거/보궐선거(18.6.13), 개헌 논의*, 국회 원구성 등의 일정예정

*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위」 활동 기한(-18.6월말)

➢ 특히, 지방선거 등 상반기에 입법, 제도개선 등에 주력 곤란

* 2020.4.13.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지방자치제/도교육감

◆ 국회 환노위, 고용부 업무보고(2018.7.25)

◆ 국회 환노위 구성(2018.6- 하반기), 고용노동부장관 교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18.10.11)

◆ 국회환노위, 고용부 업무보고(2019.3.15)

4. 노동법 개정

(2) 국회 성과

◆ 경제/정치/경제/사회문제 – 여야 입법 처리

① 경제민주화, 서민중심 경제로 가치관 및 정체성의 혼란
② 비정규직 보호법안 – 2년 미만 실업자의 양산체계
③ 60세 정년 법제화 – 청년실업 증가 원인 제공
④ 세금 주도 일자리 예산의 통과/협조
⑤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2020/2022)
⑥ 근로시간 단축–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통과?
⑦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통과 (10년)

◆ 노동법 개정 사항

1) 근로시간 단축 관련(특례제도, 특별연장근로, 중복할증 문제, 시행시기)
2)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포함), 결정기구
3) 출퇴근재해 도입
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5) 고용보험(실업급여 완화)

5. 근로시간 단축

(1) 기본방향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내용의 「근기법」 개정
(17.11.28, 개정 · 공포, 2018.5.29. 시행)

◆ 「근기법」 개정 (18.2.28. 통과, 3.20. 공포)
✓ (필요성)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 19-20대 국회 설득,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노력 등 지속한 결과

❖ 개정 이유
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의 해결,
②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1주당 최대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화,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의 규정,
③ 사실상 제한없는 근로를 허용해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 -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 축소 등
④ 근로시간제도를 정비함

5. 근로시간 단축

(2) 법개정 내용(1)

①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40+12)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감축**

* **(단계적 적용시점)**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20.1.1, ▲ 5-50인 미만: 21.7.1

② **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사유,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 적시)를 통한 특별연장근로**(1주 최대 허용 60시간) 한시적** 허용(이후 재연장 여부 검토)

③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④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 민간기업에 22년까지 단계적 적용

• **(단계적 적용시점)** ▲300인 이상: 20.1. ▲ 50-300인 미만:21.1. ▲ 5-50인 미만: 22.1.

⑤ 특례업종 대폭 축소(26→5개), 5개 업종은 **연속휴식시간** 보장(최소 11시간)

5. 근로시간 단축

(2) 법개정 내용(2)

❖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

※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

⑥ **탄력적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장관 준비행위 부칙 명시(22.12. 제도개선 방안 검토의무)**

⑦ **연소자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35시간, 1주 연장근로 6-5시간**

❖ (하위법령 개정(6.29) : 특례업종(사회복지사업) 삭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규정 등

5. 근로시간 단축

(3) 문제점

① 근로시간의 개념과 산정범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불명확한 경계, 근로시간의 측정과 관리 등의 혼선
② 시단-임금감소, 기업 생산성 감소, (단기)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근로자의 임금 감소
③ 시단 관련 조항의 실효성 확보
④ 특례제외사업-인력수급의 곤란/임금 감소, 근로시간/휴게시간의 배치 및 적용(노선버스-인력수급/임금감소, 사회복지서비스업/보육사업-휴게시간 배치운영)
⑤ 시단-고용창출 연계 – 기업의 정책 참여를 유인할 지원대책 유인

◆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 부여
➢ (노동계) 시간 정책추진 의지 우려
➢ (일　각) 시단 시행의 준비가 부족, 시정기간의 연장은 미봉책

6. 근로시간 단축

(4) 개선 방안(1)

✓ **특례업종(5개)-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적용 관련 지도 강화, 관련 법 해석 기준 마련 및 지방관서 시달(2018.8.11)**

-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기업별 지원) 주52시간 초과 기업 중심-컨설팅, 인력매칭 서비스 등 집중지원(18 .下)**

◆ **(제도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대한 현장의 요구를 고려, 실태조사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18 .下)**

6. 근로시간 단축

(4) 개선방안(2)

◆ (보완대책 마련) ICT업종, 계절산업, 수출기업 중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요구 → 실태조사(18.下)→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국회-개정 근기법 부칙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22.12.31.까지 제도 개선방안 준비 명시(제3조)

◆ (관공서 공휴일 적용 준비행위) 국회-개정 근기법 부칙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8.12.31.까지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 조사/그 결과 보고

◆ 인식개선 캠페인,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확산 추진

◆ 근로자의 상황(육아, 돌봄, 학업 등)에 따른 노동시간단축 청구권 부여 ('18.下「고평법」개정안 국회 제출)

6. 근로시간 단축

(5) 검토 (1)

◆ **(목적/방향)** 근로시간 규제문제는 점진적/현실적정책,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 필요

◆ **(기본방향)** 고용시장-임금-근로시간 연계해, 치밀한 실태분석에 의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 **근로시간 규제의 목적**

- (ⅰ) 신체의 보호, (ⅱ) 여가의 보장, (ⅲ) 워크쉐어링은 **근로시간의 규제(특히, 근로시간의 단축)를 요청하고,**
- 반면에 (ⅳ) 인사관리의 유연성 · 경제적 효율성, (ⅴ) 노사자치 · 자기결정은 **근로시간의 규제완화를 요청**

◆ **근로시간 규제의 방법**

① (ⅰ) 법령에 의한 일률적 규제(a)
② ⇒ (ⅱ) 노사에 의한 집단적 결정(b)
③ ⇒ (ⅲ) 개별 계약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c)

6. 근로시간 단축

(5) 검토 (2)

❖ 입법과정

➢ 충분한 실태 조사

➢ 외국의 실용적인 연구-ILO,EU지침, 독일,일본,미국,프랑스, 영국 등 입법례의 지식/분석

➢ 종합적으로 근로시간시스템 검토 절실

➢ 법질서 내 체계적합성/정합성,

➢ 이미 축적된 논의 상황, 학술지식의 도달점

➢ 객관적 사실 전달

❖ 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4.8%)/선택적(3.5%-)/간주(14.4%)/재량근로시간제(6.9%)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2013(10인 이상 기업(3310개소))

6. 근로시간 단축

(5) 검토 (3)

◆ **탄력적 근로시간 연장 :**

✓ **(개념)**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는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연장)** 현행 2주-3개월 ⇨ **3월(취업규칙), 1년(노사서면합의)**

✓ **(합의사항)**

① 대상범위자 범위(전부 또는 일부 가능)

② 단위기간(1년 이내에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

③ **근로일 및 근로시간(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 초과 금지)**

④ 서면합의 유효기간(특별한 제한 없음.자동연장조항 명시 가능)

6. 근로시간 단축

(5) 검토 (4)

✓ (중기중/경총) 3개월, 1년(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동의/근로자대표 협의)

❖ 미국/일본/프랑스 1년, 독일-6개월(노사합의로 그 이상)

❖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 : 숙박시설업(콘도, 호텔 등), 오락관련 서비스(놀이공원 등), 운송업(항공사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사 등), 계절관련 제조업(빙과류/전자대품 등) 등

✓ 중소기업의 상시구인난 – 5인이상 초과근로 생산차질(제조업 : 자동차, 1차금속, 고무제품, 섬유제품) – 임금격차 (감소율) 심화

❖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조사(500개사, 18.4)

① 탄력근로시간 개선 - 1년(48.2%), 6월(28.4%), 현행(18.4%)

② 필요한 정부지원책 - 신규채용/기존근로자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 업종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자금 지원(25.6%),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20.4%), 근로시간 적용 안내/컨설팅 지원(17.2%)

6. 근로시간 단축

(5) 검토 (5)

구 분	현 행	장병완 의원안	박명재 의원안	신보라·추경호·이은권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	김학용·김관영 의원안	송희경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취업규칙 규정 시 단위기간	2주	1개월	2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2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단위기간	3개월	6개월	1년	1년	1년	1년	1년	3개월/6개월

6. 근로시간 단축

(5) 검토 (6)

◆ 근로시간 특례업종/제외업종 '완화'

✓ 중소기업 뿌리업종(52시간 초과 40%, 주60시간 14%, 외국인근로자 7.6시간 초과-국내 청년근로자 대체 곤란(?)

❖ (10개업종) 뿌리산업, 섬유, 비금속제조, 농식품, 건설, 부품제조, 선박수리, ICT, 바이오, 컨텍츠 제작

◆ 근로시간 인가연장근로 '완화'

✓ (중기중)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설업의 옥외작업, ICT산업의 R&D 등 개발프로젝트 등)

◆ (추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 (중기중) 대상업종 제한 폐지-노사합의

❖ (전문형, 기획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 서비스업종

6. 근로시간 단축

(5) 검토 (7)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

✓ (중기중)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동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노사협의, 형사처벌 – 벌칙규정 완화(과태료)

◆ (추가) 화이트칼라 이금젬션(근로시간 적용제도) 도입 : (예)연봉 1억원

◆ 연차유급휴가 미소진 (⇨ 활성화 * 64,2%(2016))

✓ 근로시간저축 휴가제, 계획휴가제의 도입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법제의 적용 배제 (⇨ 확대)

✓ 근기법 적용확대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 설계함

◆ 포괄임금제 금지

◆ (쟁점) 최소 연속휴게시간제, 칼퇴근법(?), 공휴일-유급휴일화(?),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 50%(? 25%), 주휴일의 무급화 등

7. 최저임금 정책

1. 최저임금-인상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및 '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을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의결(18.5.28,19.1.1 시행)

➢ 2019년 최저임금 논의-결정(법정심의18.6.28./법정결정 7.14)

➢ 7.14 최저임금委, 19년 적용 최저임금안 8,350원*(인상률 10.9%, +820원) 의결 → 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고시(8.3)- 재심의

◆ 정부, 제11대 최임위 위원 26명 신규위촉(18.5.14.-3년간)

❖ 청년유니온 근로자위원 1명,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

❖ 여성위원 7명(전대 5명)

◆ 최저임금법 통과 : 양대노총 농성, 결의대회, 위헌소송, 사회적대화 파행

7. 최저임금 정책

2. 과제(1)

(1) 속도 조절 방법 : 현장 상황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60.5%)

❖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42.9%), 결정주기 확대(29.4%), 연령대별 감액(24.4%)

▪ **출처 : 중소기업 CEO의 경영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2018.2월**

❖ **(중소기업 현장 대응) 별다른 대응없음, 감원, 고용 축소, 사업종료 등**

❖ **(자영업 현장) 감원-가족경영으로 대체, 셀프기계 도입 등 방안 고려**

❖ **최저임금제는 16개 법률, 31개 제도와 연계(사회보장 및 보상제)되어 그 급격한 인상은 국가재정 부담**

(2) 최저임금법 추가 개정 과제

①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

② **주휴 수당 : 유급 또는 무급화 문제**

③ **개정 최저임금법의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개정안 관련 문제**

④ **최저임금 위반 벌칙강화-과태료부과(체불임금해소-근로감독 강화)**

⑤ **업종별/산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⑥ **결정체계 이원화**

* 최저임금제 개정-산정방법



월급여에 대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유급 근로시간 수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7,530원 x 209시간)



월급 1,310,220원
(7,530원 x 174시간)



대법원

소정근로시간 수

'쉬운' 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데이터 출처 : www.forest.go.kr/

www.mangoboard.

* 최저임금제 개정-구분적용

		현행	이정미·강병원 의원안	추경호·신보라·홍일표·김종회·나경원 의원안	김동철·이언주·권은희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김학용 의원안	이현재·박대출·윤상직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구분적용 삭제 (단일최저임금)			○						
업종별 구분적용 가능		○							
구분 적용 의무	업종별			○	○	○	○	○	○
	규모별				○			○	○
	지역별					○		○	○
	연령별						○		○

* 정부개편안 - 결정체계 이원화



정부개편안에 따른 결정체계 이원화 개요

8. 노동기본권 신장

1. 노동기본권 신장(1)

□ 추진내용(1)

◆ 불합리한 지침 폐기 등을 통한 현장 갈등 해소

➢ 2대 지침* 공식 폐기선언(17.9.25)/위법한 단협지도 변경계획시행(17.10.30)

- 공정인사 지침/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 불합리한 단협 시정지도 중단/산재사망자 자녀우선채용 시정 유보(대판 시까지)

◆ 노조 활동 보장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호

➢ (특고) 국가인권委 특고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 수용(17.8), 택배기사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 전국택배연대노조(17.11.3)·전국택배노동조합(18.2.7) 설립신고증 교부

8. 노동기본권 신장

1. 노동기본권 신장(2)

□ **추진내용(2)**

◆ **(전공노) 09년부터 위법 규약 등으로 법외노조로 활동해온 합법화를 위한 설득 노력 추진**

❖ **17.9월 이후 총 6차례 실무협의 진행 · 설득한 결과, 전공노 노조규약을 개정(해직자 노조가입 배제), 임원에서 해직자를 제외해 기존 위법사항 시정**

◆ **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강화**

➢ **18년부터 중·고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노동권 내용 반영,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시(교육부 협조)**

➢ **중·고교 교사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등 운영(18년~,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교육 확대, 지자체·민간단체 등 교육기관 지원

8. 노동기본권 신장

1. 노동기본권 신장(3)

◆ (ILO 핵심협약 비준) 법·제도 개선 추진 (18.下~), 완료되는 협약부터 비준 추진

①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공무원 단결권 등
② 강제근로 협약(29호, 105호): ▲보충역 제도, ▲쟁의행위 참가 징역형 부과

◆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미조직·취약 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보호,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노동위 기능강화 등

□ 성과

◆ 도입 과정시 사전합의가 부족했던 불합리한 지침의 폐기/ 보완을 통해 노사 정간 신뢰 회복 도모, 사회적 대화 초석 마련

◆ 특고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자율적 개선 유도 및 9년 만에 전공노 설립신고증 교부 등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18.3월)

8. 노동기본권 신장

1. 노동기본권 신장(4)

□ **향후 과제**

◆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18.1~)

◆ 전문가 의견 수렴 후(~18.7)

◆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국회에 법안 제출(18.하)

◆ 18.11.21.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 발표

◆ 18.12.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논의 중

- (노) 산별교섭제도화, 창구단일화 개선, 쟁의대상 확대, 형사처별대상 개선
- (사) 대체근로 허용, 부노 처벌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확대

❖ [경제사회노동위] 노사관계 제도 · 관행 개선위원회(18.7.20~11. 21)

➢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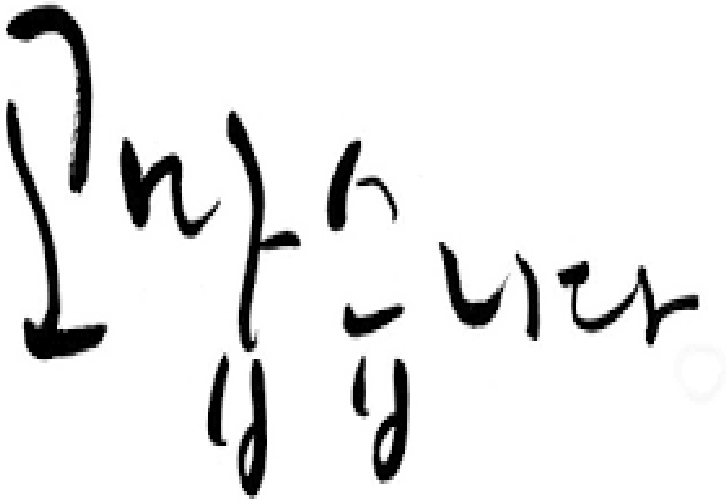
➢ (단기) ILO 기본협약 비준 방안 구성,

➢ (장기) 자치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8. 노동기본권 신장

1. 노동기본권 신장(5)-단결권 강화 우선

구분(관련 법 조항)	주요 내용
노조가입 범위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 초기업 노조임원 자격은 노조가 자율 결정/기업별 노조는 재직자에 한정하여 임원자격 부여 ➢ (특수형태종사자의 근로3권 인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법 제24조 2항)	➢ - 및 쟁의행위 처벌규정 삭제 ➢ 면제한도 초과하는 노사합의 무효화
공무원·교원 -노조가입 (공무원노조법 제6조, 교원노조법 제2조)	➢ 가입대상 확대(현 6급 이하→5급 이상) ➢ 퇴직 공무원/교원/소방공무원, 교수 노조가입 허용
노조설립신고제도 (노조법 제10조 /제23조)	➢ 조합원 아닌 자의 노조임원 자격 허용



Lee Seung-Gil
Sglee79@ajou.ac.kr
010-4766-7324